

노동교육 경험과 노동권 인식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1)

박 정 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

I. 노동교육은 무엇인가?

노동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노동권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나아가, 노동교육이 효과적으로 노동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내용과 방식으로 수행해야 할까? 이런 문제의식들은 노동교육을 사회·노동정책 영역에 포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노동교육의 내용과 노동권 인식의 관계를 실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함으로써,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교육의 개념과 의미는 계몽 운동과 광복 운동, 노동 통제와 기술 교육, 노동자 저항 운동 같은 시대적 과제와 결부하면서 변화해왔다. 국내의 노동교육의 개념이 복잡한 이유는 가치지향의 성격이 강하고, 특정 시대의 의식을 노동교육에 반영하거나 다양한 입장과 주체에 따라 목적과 내용을 변화시켜왔기 때문이다(신태중 외, 2021). 노동교육의 정체성은 아직 모호한 측면이 많고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지만(김정일, 2006; 신태중 외, 2021), 기존의 직업기술교육과 노동자 저항 운동의 맥락을 넘어서 법·정치·실천 지식과 감수성·윤리 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가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실천 현장의 노동교육 현황을 살펴본 신태중 외(2021)와 이승욱 외(2019)를 보면, 노동교육은 크게 노동법, 노동인문학, 노동이해, 노동조합으로 대략 나뉘볼 수 있고, 법·경제·사회문화·역사·정치의 요소들과 개별 노사관계와 집단 노사관계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노동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박래영·정우현(1995)은 노동교육의 목적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둘째,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를 위한 노동교육, 셋째, 노사관계 진보를 위한 노동교육, 넷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교육, 다섯째, 인간적 삶의 성장을 위한 노동교육이다. 이러한 논의에 송태수(2014), 진숙경 외(2020), 설규주 외(2019)는 국민기초교육 및 정치교육이라는 목적을 추가하였다. 특히, 설규주 외(2019)는 교육의 내용 요소를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역사, 지리 6가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동교육을 노동법교육, 노동이해교육, 노동인문학교육, 노사관계교육, 노동안전교육,

1) 이 글은 2022년도 한국산업노동학회 가을학술대회와 2023년도 「산업노동연구」 29권 2호에 제출된 논문을 축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교육 6가지 세부 내용으로 <표 1>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노동교육에 대한 정의

개념	주요 활동	대상	내용	최종 목적
노동 교육	· 노동에 관한 법적·정치적·실천적 지식 · 노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전달	· 시민 · 노동자 · 사용자 · 조합원	· 법·정치·경제·사회문화 · 역사·철학 · 개별 노사관계 · 집단 노사관계	· 노사관계 안정 · 노동자 의식 함양 · 국민기초교육 · 인간적 삶 성장 · 노동조합 조직 강화
세부 내용	노동법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지식 전달	· 법 · 개별 노사관계	· 개인적 노사 현실 이해도 제고(노사관계 안정) · 법을 통한 실천력 향상(노동자 의식 함양) · 국민기초교육
	노동 이해	· 노동에 관한 폭 넓은 배경지식 전달	· 정치·경제·사회	· 개인적 노사 현실 이해도 제고(노사관계 안정) · 노동권 개혁에 대한 실천력 제고(노동자 의식 함양) · 국민기초교육
	노동 인문학	· 노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전달	· 철학·역사·문학	·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인간적 삶 성장) · 직업적 성숙(인간적 삶 성장) · 노동 소외 문제 체감(인간적 삶 성장) · 국민기초교육
	노동 안전	· 안전한 노동을 위한 지식 전달	· 노동자 · 사용자	· 정치·법·사회문화 · 산업안전에 대한 주체적 대응력 향상(노동자 의식 함양) · 노사 간 평화적 생산 활동 제고(노사관계 안정)
	노사 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배경지식 전달	· 노동자 · 사용자	· 경제·사회문화·역사 · 집단 노사관계 · 집단적 노사 현실 이해도 제고(노동자의 의식 함양) ·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주체적 실천력 향상(노동조합 조직 강화) · 집단적 노사관계의 안정(노사관계 안정)
	노동 조합	· 집단 노사관계에 대한 실무 지식 전달	· 조합원	· 법·정치 · 집단 노사관계 · 노동조합의 설립·운영·교섭의 실천력 향상(노동조합 조직 강화) · 노동조합원의 결속력 강화(노동조합 조직 강화)

노동교육과 노동권 인식의 관계가 사회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룬 이론은 자유주의 관점과 갈등주의 관점 두 가지가 있다(김민호, 1994). 자유주의 관점은 노동교육을

주로 개개인의 노동권 인식을 향상시키는 교양교육으로 보는 것으로, 개인적·인간적·직업적 성숙을 지향하는 입장이다(정우현, 1988; 김승환, 1988; 김윤환, 1990). 이 관점은 노동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도모할 때만이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갈등주의 관점은 노동교육을 노동자에게 ‘사회 변혁과 역사 발전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과정’ 또는 ‘자본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사상 공격에 대응하고, 투쟁과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의식적 토대를 형성하는 교육’으로 본다. 노동교육을 노동운동 내지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입장이다(김금수, 198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사회 발전은 노동자의 정치적 의식 고양과 주체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노동교육 경험과 노동권 인식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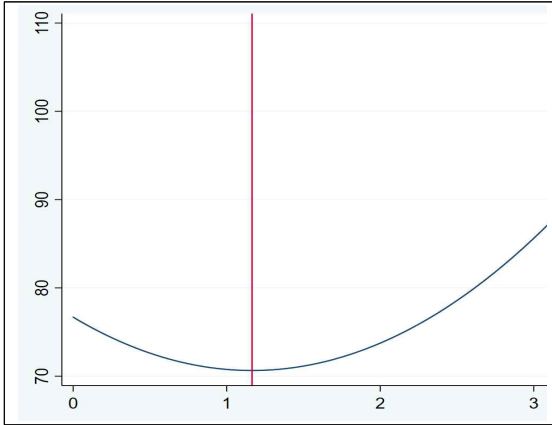
본 연구는 노동교육 경험요인을 이수 여부, 이수 횟수, 이수 내용 수로 보았고, 이수 여부, 이수 횟수, 이수 내용 수 3가지 변수를 혼합하여 ‘노동교육 경험지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동권 인식은 ‘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집단적 권리와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대한 관념’이다.

노동교육 경험지수와 노동권 인식지수의 관계는 U자형 비선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1점인 경우엔 오히려 내려갔다가 2점과 3점이 되면서 상승하는 관계를 보였다(변곡점 1.16). 또한, 이수 여부·이수 횟수와 노동권 인식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수 내용 수는 다시 U자형 비선형 관계를 유의미하게 보였다(변곡점 1.68). 한편, 이수 횟수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간접적 영향이 있는지와 노동교육 경험요인 간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수 횟수와 이수 내용 수의 상호작용항을 분석하였고, 이 변수는 정적인 관계를 유의미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교육 경험요인(이수 여부·이수 횟수·이수 내용 수) 중 이수 내용 수만이 노동권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수 횟수는 이수 내용 수가 함께 늘어날 때 상호작용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권 인식은 이수 여부와 횟수라는 형식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교육을 이수했는지가 중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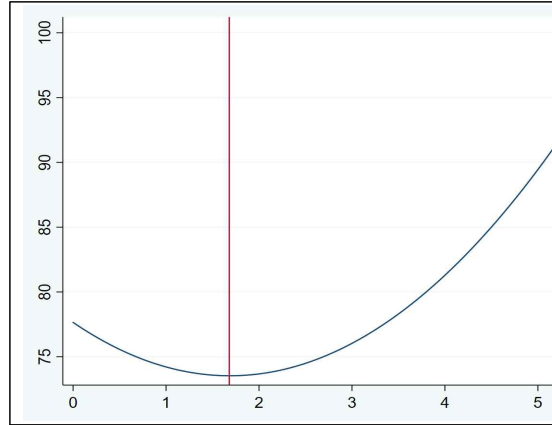
노동교육 경험과 노동권 인식의 관계에 가치지향성이 영향을 준다는 해석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두 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매개효과(회귀계수 3.82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교육 경험지수의 제곱항과 노동권 인식지수 간 관계성(회귀계수 4.448)의 86.0%를 매개효과가 차지하였다. 오히려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통계적으로 크게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교육을 진행할 때 청중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 경험지수와 인식지수의 관계



〈그림 2〉 이수 내용 수와 인식지수의 관계



Ⅲ. 노동교육 세부 내용과 노동권 인식의 관계

교육 구성에 시사점을 주기 위해, 6가지 노동교육(노동법, 노동이해, 노동인문학, 노동안전,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세부 내용 중 어떤 교육이 노동권 인식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각 세부 노동교육의 이수 여부와 노동권 인식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동인문학과 노동조합교육이 노동권 인식지수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이해, 노동안전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미한 두 변수의 세부적인 통계 경로를 각각 분해하면, 두 변수 모두 노동권 인식지수의 하위 지수들(개별 권리지수, 집단 권리지수, 사회적 권리지수, 행동 인식지수)과 전반적으로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특히 노동인문학은 사회적 권리지수와 집단 권리지수와 높은 관계성을 가졌고, 노동조합은 집단 권리지수와 행동 인식지수와 높은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통계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노동교육을 이수한 개인은 노동권 인식지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노동인문학을 받은 개인은 사회적 권리지수와 집단 권리지수가 높으며, 노동조합교육을 받은 개인은 집단 권리지수와 행동 인식지수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동인문학은 시민들의 노동권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인간적 삶의 성장을 목표로 노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전달하는 교양교육으로, 해당 교육이 사회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에서 노동권 인식을 타당하게 제고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교육은 조합원들의 실천력과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이들의 집단 권리지수와 행위 인식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교육의 현황을 검토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육이 노동법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이승욱 외, 2018; 송태수 외, 2021; 신태중 외, 2021).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교육이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선, 노동인문학교육과 노동조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노동인문학은 나머지 5가지 교육을 진행할 시에도 함께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V.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는 ‘노동교육 경험요인(경험지수, 이수 여부, 이수 횟수, 이수 내용 수)은 노동권 인식지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 관계에서 노동교육 경험요인 내 세부 관계는 어떠한가’, ‘세부 교육 내용들(노동법, 노동이해, 노동인문학, 노동안전, 노사관계, 노동조합)은 노동권 인식지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은 노동교육 경험지수와 노동권 인식지수는 통계적으로 오목형 관계(U자 비선형관계)를 보였고, 특히 이수 내용 수가 해당 관계에서 유의미한 구성 요소로 나타났다. 이수 여부·횟수는 이수 내용 수가 함께 늘어날 때 증가하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노동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 즉, 개인의 노동권 인식의 상승은 이수 여부나 이수 횟수와 같이 형식적인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수 내용의 다양성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실질과 형식이 어우러질 때 노동권 인식은 가장 효과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은 노동인문학교육과 노동조합교육이 노동권 인식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노동교육을 이수한 개인은 노동권 인식지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노동인문학을 이수한 개인은 사회적 권리인식과 집단 권리인식이 높았으며, 노동조합교육을 이수한 개인은 집단 권리인식과 행위 인식이 높았다. 노동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노동교육이 개별 노사관계의 노동법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이승욱 외, 2018; 송태수 외, 2021; 신태중 외, 2021), 향후에는 개별 노사관계 측면에서 알아야 할 권리나 법 지식을 넘어, 인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존재하는 갈등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관계를 철학·역사·문학 등을 활용하여 인간적 삶의 성숙을 자극하는 인문학 교육을 복합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진숙경·장운호, 2020). 또한, 집단 노사관계의 노동교육은 아직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볼만 하다.

위 분석 결과가 노동교육정책과 행정 체계에 주는 실천적 시사점을 확장해보면, 노동교

육정책은 개인에게 단회차 노동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노동교육으로 발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많은 노동교육은 형식적인 대규모 강의형 집합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이승욱 외, 2018; 송태수 외, 2021), 대규모 집합교육 중심에서 소규모 집중교육 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신태중 외, 2021), 여전히 강의 간 연계성이 부족한 일회차 집체교육이 일반적이다. 또한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동시에, 양적인 결과(output)중심으로 이루지는 행정 평가도 교육의 내용 구성과 효과(outcome)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즉, 예산 대비 수강 인원과 같은 양적 평가가 아닌, 얼마나 다양한 교육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내용의 다양성), 단발성이 아닌 연계성은 얼마나 있는지(제공의 연계성), 내용상 청중들의 공감을 높여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교육 필요성의 공감 제고), 실제 노동권 인식 개선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교육의 효과성)가 가미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 중심의 산출 평가에서 교육의 방식·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민 중심의 효과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노동교육을 제공하는 행정 인프라는 커리큘럼 교육을 염두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멀리 떨어진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금수. 1988. “노동교육의 발전과 노동교육의 임무”. 『노동조합의 길』 제1호. 한국노동교육협회. 서울: 도서출판 한결.
- 김민호. 1994. “한국 현실에 적합한 노동교육 모형 탐색 -노동교육의 용어와 쟁점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3집: 1-20.
- 김승환. 1988. “산업사회와 노동교육-사회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교육연구』. 13: 101-113.
- 김윤환. 1990. “한국노동교육의 이념과 기본 방향”. 『한국노동교육의 진단과 발전과제(창립1주년 기념 세미나 종합보고서)』. 한국노동교육원. 3-26.
- 김정일. 2006. “노동교육의 평생교육적 의의와 개념 정립에 관한 소고”, 평생교육·HRD연구 2(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 연구사업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래영·정우현. 1995. “세계화를 위한 노동교육의 이념과 역할, 세계화를 위한 노동교육의 이념과 발전과정”. 한국노동교육원.
- 설규주·옹진환·정수진. 2019. “노동인권교육의 원칙 및 내용체계에 대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

구』. 51(4): 151-180.

송태수. 2014. “청소년 노동의식 및 노동교육 실태 조사결과 분석과 함의”. 은수미의원실·노동부
유관기관 노동종합 주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문.

신태중·김금숙·이주환. 2021. “서울지역 노동교육 현황과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서울노동
권익센터.

이승욱·박귀천·박은정·신수정·이소라·강주리. 2018.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취약노동자 교육
및 지원방안 연구”. 국제노동법연구원.

정우현. 1988. “노동교육의 사회교육적 의의”. 『사회교육연구』. 13: 133-146.

진숙경·장윤희. 2020.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기도교육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1. “국민 노동인권의식 실태조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